

방화범은 반드시 검거된다는 인식을 주어야

1. 머리말

방화에 의한 화재는 선진국에서 높게 발생하고 농촌보다 도시지역에서 주로 발생한다.

1960년대에는 3.9%이던 것이 경제성장과 때맞춰 80년대에는 7.6%의 발생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서울은 전국 방화화재의 30%를 점하고 있다.

가. 방화의 대상과 시간대

방화범의 행동특성에서 볼 때 빈집이나 창고, 인적이 드문 장소를 대상으로 많이 삼고, 주로 청소년층의 Vandalism동기가 많다.

(1) 방화의 대상

방화범이 선호하는 대상은 주로 창고, 빈집, 아파트 현관, 주택 대문 등 비교적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한 건물이나 차량 또는 인근 야산이다.

건물 용도별로 보면 공동주택(39.8%), 창고(8.2%), 공장·작업장(6.4%), 기타(5.7%), 음식점(5.4%), 차고·주차장(5.1%)의 순이다.

<방화화재분석>

연도 구분	연도 평균	'84	'85	'86	'87	'88	연평균 증가율(%)	
건 수	629	416	455	555	775	945	23.3	
인 명 피 해	계	198	126	147	255	199	261	25.9
사 망	64	40	58	78	58	85	25.1	
부 상	134	86	89	177	141	176	26.7	
재산피해	660	314	318	427	1,136	1,104	49.7	



최종태

〈대구직할시 소방본부장〉

유럽지역에서도 방화범이 선호하는 대상은 비슷한 특성을 보인다.

네델란드에서 방화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주택(30.8%), 차량(18.4%), 학교(6.9%), 상점(3.8%), 공공건물(3.7%), 병원, 식당(3.0%) 등의 순이었다.

영국에서는 전체화재중 학교(50.2%), 위락시설(41.0%), 공사장(37.2%), 상점(25.6%), 병원(20.0%), 농장(18.5%), 호텔(15.1%) 등의 순이었다.

(2) 방화의 시간별 특성

일반화재의 발생시간은 하루중

특정한 차이가 없다. 대개 일반화재는 주야간에 고르게 발생하지만 방화화재는 주로 야간이며 시간별로 보면 20:00~익일 06:00까지 일관성 있게 발생하고 있어 발생시간대의 특성을 보인다.

(3) 방화 대상물의 취약요인

방화 취약대상물은 건물이 비어 있거나 주위의 감시기능이 허술하고 인적이 드문 곳이다. 이런 대상이 있는 특정지역의 동일장소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방화를 한다.

그것은 경비원이 없거나 경비가 허술한 대상은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장소는 은밀히 범행할 수 있는 곳이다.

또한 방화후 퇴로가 확보된 지역의 건물은 특히 방화의 취약점이 많다.

나. 피해의 심각성

방화화재로 인한 피해는 실화에 의한 피해보다 훨씬 심각하다.

최근 5년간 방화화재의 발생증가율은 23.3%인데 비해 피해면에서는 인명피해가 25.2%, 재산피해가 49.7%이다. 이를 전체화재와 비교하면 인명피해는 전체화재에서 6.4% 증가한 반면 방화화재에서는 11.0%로 일반 실화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88년중 방화건수는 945건에 인명피해 261명(사망 85, 부상 176명)으로 화재 1건당 인명피

해율은 실화 0.14 명에 비해 방화 0.28 명으로 방화의 인명피해정도가 2 배 이상 심각함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사망피해는 방화 1 건당 0.09 명으로, 실화화재 1 건당 0.08 명보다 높게 나타나고, 사망자 구성비로는 전체 화재사망자의 20.5 %를 방화화재가 차지하고 있다.

다. 산업체의 방화

산업체의 방화범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방화의 동기와는 다르다. 산업체 방화범은 주로 그 산업체와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다. 즉, 혐직 및 전직 고용인, 경쟁업체, 고객, 사회적·정치적 특별이익집단, 업체 보안요원, 노동쟁의 기간중의 고용인 또는 내부개입자 들이다.

(1) 산업체의 방화 취약성

창고나 빙 건물, Dock와 Platform(트럭, 철도)은 산업체에서 가장 취약한 장소이다. 그러나 사무실이나 판매장은 비교적 덜 취약하다.

창고는 대부분 본부에서 떨어져 있어 경계가 소홀하여 접근이 용이하며, 비어있는 건물은 청소년 Vandal들의 접근이 쉽고, 또한 비어있는 건물은 이를 불량 청소년들의 놀이터나 숙식장소로 이용되기 때문이다.

Dock시설과 Platform시설은 현장에서 유류등 연료(방화용 가

속제)를 구하기 쉬우며 많은 사람이 출입하기 때문에 접근이 용이하고 방화후 도주로가 확보되기 때문이다.

(2) 방화의 방법과 시간

방화범이 방화를 할 때는 보통 2~3 곳 또는 여러 곳에다가 거의 동시에 연속적으로 불을 지른다. 첫번째 방화가 실패하면 2~3 주 이내로 다시 방화를 시도한다.

방화시간대는 일반 방화시간대와 비슷하다. 보통 근무시간 이외의 야간에 불을 지르는데 야간은 자체 경계가 허술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3) 산업체 방화 방지효과

산업체의 방화를 방지하는데는 Fencing(울타리), Lighting(방범등), Alarm System, 출입문 시건장치 등 시설보호방법과 인적경계활동방법이다. 이 두 가지를 모두 활용하여야 자체경계에 효과를 기할 수 있다.

2. 방화화재의 문제와 대응방향

가. 방화화재의 문제

(1) 방화화재의 급증 추세

우리 나라의 방화화재는 다른 외국과 비슷한 실태를 보이고 있다. 즉 산업화, 도시화 추진에 따라 화재의 양상도 다양해지면서 방화화재도 동기나 수법이 매우 다양화되는 추세에 있다.

통계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하여 아직은 낮은 발생율이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외국의 경우는 방화화재를 방화와 방화의 의심있는 화재를 합하여 방화화재로 통계처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방화가 명백한 화재만을 방화로 통계 처리하므로 통계상의 수보다는 높으리라고 본다.

그러므로 방화와 방화의 의심이 있는 화재는 모두 방화화재로 통계 처리할 때 우리나라로 영·미국이나 일본의 발생률과 비슷한 추세에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통계상 암수처리되는 방화의 의심이 있는 화재는 범인검거가 소홀해 질 여지가 매우 많다.

(2) 피해의 심각성

방화화재는 피해가 매우 심각하고 위험하다. 화재로 인한 치사율이 일반화재에 있어서는 화재 1 건당 0.14 명인데 비하여 방화화재에서는 0.28 명으로 2 배 이상이다.

또한 방화화재는 방화범이 다른 범죄를 은닉하거나 살인목적 등으로 방화하는 사례가 점증함에 따라 앞으로는 치사율이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방화화재는 또한 행정대상으로 통제가능성이나 관리가능성의 한계가 있고 위험성에 관한 사회적인 인식도 낮은 편이다.

(3) 전문연구 및 조사활동 미흡

(가) 방화화재예방 전문연구 활동
우리나라에서는 방화화재에 대응하는 전담연구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방화화재의 예방을 위한 연구는 관, 민간단체를 망라한 전문가의 깊이 있는 연구를 필요로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전문가의 공동연구활동은 없고, 다만 행정기관의 일부에서와 한국화재보험협회, 한국형사학연구소 등에서 부분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근본적이고도 적극적인 방화화재의 예방을 위해서는 전문기구에 의한 종합적인 공동연구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나) 방화화재 전담조사활동 미흡
방화화재의 예방은 무엇보다도 방화범은 반드시 겪거된다는 인식이 가장 효과적이다. 방화현장에서 방·실화 여부를 정확히 가려 방화 또는 방화에 의심있는 화재는 반드시 그 범인을 체포하여야 한다. 연속방화 화재인 경우만 하더라도 동일범의 방화행위가 여러 건 발생한다.

그러므로 방화범의 신속한 검거는 적어도 동일범에 의한 재범을 방지하는 특수적 제지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방화범 검거에 수사기관의 통상적인 수사활동으로 그치고 특수한 경우만 전담반이 편성되어 방화범 필검체제에 미흡한 점이 있다.

(4) 지역사회 관계미흡
행정기관과 지역사회 주민과의 공공관계는 주로 홍보수단을 통하여 형성되고 추진된다.

방화화재의 예방을 위한 대응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는 행정과 지역주민의 바람직한 관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방화화재에 대한 인식자체가 낮은 실정이므로 지역사회 관계개선을 위한 문제인식이 안되고 있다.

매년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정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홍보 Program만으로는 방화화재 예방을 위한 행정의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원활히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나. 방화화재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

방화화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는 특정 행정기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향후 우리나라의 방화화재예방을 위한 대응활동의 방향으로는 법적·행정적 측면, 사회환경적 측면, 사회통제적 측면 등 분야별로 종합적인 연구활동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1) 법적·행정적 측면

(가) 법적인 측면
화재예방에 관한 입법적 사항은 현재 소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소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화재예방은 소방대상물이라고 하는 대물적

예방조항이다.

방화화재는 일반화재(실화)와는 달리 행위자의 의사에 따른 인위적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대인적 범죄예방을 위한 별도의 법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 현재 경찰관직무집행법(제 6 조)을 보완하여 방화범죄의 예방적 활동을 구체화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일 수 있다.

(나) 행정적 측면

검찰, 경찰, 소방 등 공안 행정기관은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방화화재 예방을 위한 대인적·대물적 예방조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체제가 유지되어야 한다.

행정협조체제의 효과를 기하기 위하여는 외국의 제도에서처럼 방화화재예방추진위원회 같은 위원회 또는 전문연구활동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위원회나 연구기구는 공안행정기관 이외에 형사학연구소, 화재보험회사, 화재학회, 도시계획가, 심리학자, 정신과의사 등 각계의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다) 지역사회 관계개선

방화화재예방을 위한 대인적, 대물적 예방조치의 필요성이라든가 전문연구기구에서 연구한 결과를 지역사회주민 활성화 자율참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방화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

은 행정기관과 지역사회 주민간의 관계가 바람직한 상태에 있어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행정기관과 지역사회 주민과의 관계를 개선하는데는 주민자원봉사단체나 자생적 Group 등과 접촉하거나 특별한 홍보기법을 활용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다.

(4) 산업체등 자위방화관리체제

산업체는 특히 방화화재의 취약성이 높기 때문에 업체 스스로 자기시설을 방호할 필요가 있다.

산업시설의 방호수단으로는 Fencing, 방등 설치, 경보시설, 창고등 방화목표가 될 시설물의 시건장치 등 시설면에서의 방호수단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출입자 통제, 수상한 출입자의 휴대품 조사, 시설물의 점검, 순찰 등 인적 경계활동을 강화하는 체제가 추진되어야 한다.

산업체 자위방호에는 보안요원(Security Personnel)의 높은 사기가 유지되어야 함으로 시설주는 경비원이나 시설물 안전관리요원 등의 사기관리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관계 행정기관에서도 산업체 보안요원의 임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그들의 활동에 신분적 보호를 해 주어야 한다.

(2) 사회환경적 대응

방화화재의 동기에는 소비생활이 고도화된 도시생활환경, 가정환경, 사회생활의 윤리도덕관의



변화 등 사회적, 가정적 환경이 크게 작용한다.

방화화재의 예방에는 이와 같은 사회환경을 고려한 대응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 방화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청소년 선도 Program은 학교나 지역사회, 가정에서 확대 운용되어야 한다. 청소년 상담원으로 학교교사나 정신과의사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지역사회 행정기관은 교사나 학부모, 정신과의사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청소년 선도 Program의 효율적인 운영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의 유해환경을 정화하고 건전한 윤리, 도덕관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민정신운동 Program의 운영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방화화재 예방을 위한 사회환경적 대응은 법적, 행정적 측면에서 본 지역사회 관계개선과 함께 추진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3) 사회통제적 대응

방화화재의 예방은 사회통제론적 제지기능으로 직접적인 효과를

기할 수 있다.

방화범의 검거와 처벌에는 신속성과 엄격성, 확실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방화범은 반드시 검거되고, 처벌은 엄격해야 사회통제에 있어서 일반적 제지효과와 특수적 제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

방화범의 필검에서 오는 특수적 제지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행 수사체제로는 미흡하다.

미국 Indiana Police에 처럼 전담조사 Team의 운영이 바람직 할 것이다.

전담조사Team은 지역사회 단위로 경찰관과 소방전문요원으로 협동 구성하고 수사주관기관의 장이 이들의 조사활동을 통합,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되면 화재현장조사에서 화재원인인 방화냐, 실화냐를 구분하여 수사의 단서를 얻기 쉽고, 방화범이나 방화의심이 있는 화재를 끝까지 추적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범인을 체포하는데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